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8. 11. 21.(수) 총 4매 (본문 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	담당자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류나린 • ☎ (044) 201-4307, 4315
보 도 일 시		2018년 11월 22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1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유선승인 받고 즉시비행 가능 항공안전법 특례 대상 공공목적 확대,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90일→30일 단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·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「항공안전법」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○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장의 드론활용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.

□ 개정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(시행규칙 제308조)

-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*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.

* 관제권,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

② 공공목적 긴급 상황 적용범위 확대(시행규칙 제313조의2)

-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, 야간·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 확대된다.

-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이 소방, 산림분야로 국한되었으나,
-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,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,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,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확대된다.

③ 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 완화(시행규칙 제308조)

- 그간 지면·수면·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했으나,
- 사람·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기체(드론)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(건물 등)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
- 고층건물의 화재상황 점검·시설물 안전진단 등의 효과적인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.



④ 특별비행승인기간 검토기간 단축(시행규칙 제312조의2)

- 야간·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이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(신기술 검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)되어 특별비행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이다.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, 야간·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.”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청회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류나린 사무관(☎ 044-201-43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	--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
① 공공목적 긴급 상황 시 비행승인 절차 합리화	공공목적 긴급 상황에서 관제권·비행금지구역 內 또는 25kg 초과 드론 비행 시 비행 3일 전 비행승인신청 필요	공공목적 긴급 상황에서 관제권·비행금지구역 內 또는 25kg 초과 드론 비행시 <u>승인기관에 유선승인 후 비행가능(비행종료 이후 비행승인신청서 제출)</u>
② 공공목적 긴급 상황 확대	① 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·구조 ② 응급환자 장기(臟器) 이송 등 구조·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 산림 방제·순찰	① 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·구조 ② 응급환자 장기(臟器) 이송 등 구조·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 산림 방제·순찰 <u>⑥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⑦ 시설물 붕괴·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·재해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⑧ 풍·수해 및 수질오염 시 긴급점검 ⑨ 테러 예방 및 대응</u>
③ 고도기준 합리화	지면·수면·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 필요	<u>사람·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150m 내 가장 높은 장애물(건물)의 상단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가능</u>
④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단축	야간·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90일	야간·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<u>30일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)</u>